

#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

## 1 기본 현황

###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서울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대상 상해, 배상보험 가입 ○ 사업기간 : 2018.3.1.~ 2019.2.29		
사업비 (당해년도)	1,268,850천원	(국비)	(사비)1,268,85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###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여성가족정책실	보육담당관	김혜정 2133-5088	윤병수 2133-5099	방혜진 2133-5101

## 2 예산 설명

###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(x-)
계	(x-) 1,342,350	(x-) 1,268,850	(x-) △73,500	(x-) △5
자치단체경상보조 금	(x-) 1,342,350	(x-) 1,268,850	(x-) △73,500	(x-) △5

###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1,268,850,000원	= 1,268,850천원

### 3 사업 설명

**사업목적**

-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을 단체가입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 및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보육부담 경감.

**사업근거**

- 영유아보육법 제 36조(비용의 보조 등)
- 서울시 보육조례 제18조(비용의 보조)

**사업내용**

- 규 모 :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
- 사업기간 : 2018.3.1.~ 2019.2.28
- 사업내용 :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상해 및 배상 보험 가입
- 총사업비 : 1,268,850 천원

**추진경위**

- 어린이집에서 주의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
-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: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,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함.

**2018년도 추진일정**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,268,850	
계획수립	2018.02~2018.02		계획 수립
공제회가입	2018.03~2019.02	1,268,850	어린이집 배상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

### 4 사업 효과

**최근 3년 추진실적**

2014년도	○ 사고 발생 5,858건에 대해 12억 1,138만원 보상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015년도	○ 사고 발생 5,289건에 대해 11억 2,639만원 보상
2016년도	○ 사고 발생 4,679건에 대해 10억 5,106만원 보상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어린이집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 및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

**5**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4	(x-) 1,249,600	(x-) 0	(x-) 0	(x-) 1,249,600	(x-) 1,218,021	(x-) 0	(x-) 31,579
2015	(x-) 1,280,000	(x-) 0	(x-) 0	(x-) 1,280,000	(x-) 1,217,658	(x-) 0	(x-) 62,342
2016	(x-) 1,223,530	(x-) 0	(x-) 0	(x-) 1,223,530	(x-) 1,208,347	(x-) 0	(x-) 15,183